

2023년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15.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연희, 박재화,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0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32건(안전번호 제2023-34726호~3595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34726호~34733호(순번 1번~8번)는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34734호~34740호(순번 9번~15번)는 카페와 웹하드를 통해 영상물 및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이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34741호~제2023-35957호(순번 16번~1232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5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0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3-108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071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8번은 보

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8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앞서 검토를 거쳐 가결해왔던 종류의 안전으로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 별도 의견 없음. 가결 의견임.
- B 위원, C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8번은 삭제 및 전송 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번 내지 1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영상물 및 만화의 불법복제물 총 7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9번 내지 15번 영상물 및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 내지 15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번 내지 123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05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안도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안도르'임. 2022년 9월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드라마의 한 시즌 전체 12화를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중임.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22번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로, 2023. 3. 1. 극장 개봉하여 현재 OTT 서비스를 통해 판매중인 영화 전체 1시간 41분 분량을 다운로드 제공중인 사안임.

(영화 '존 워 4'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60번은 영화 '존 워 4'임. 2023. 4. 12.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2시간 41분 분량을 판매중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16번부터 1232번까지 총 2,054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 내지 123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34726호~34733호(순번 1번~8번)와 안전번호 제2023-34734호~34740호(순번 9번~15번)에 대해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34741호~제2023-35957호(순번 16번~1232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0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22.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